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오영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522

발의연월일: 2021. 9. 13.

발 의 자:오영환・이개호・김병기

이병훈・박 정・윤재갑

김주영 · 강준현 · 임오경

기동민 • 이수진비 • 전용기

윤준병 • 문정복 • 김승남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, 개인 채무자가 파산선고 확정 후 면책허가를 받더라도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(이하 "학자금상환법"이라 한다)에 따른 "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"의 청구권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.

그런데 최근 학자금상환법의 개정으로, 개인파산 시 "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"는 조항이 삭제되었음. 이에 따라현행법의 면책규정은 학자금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학자금상환법의 취지와 충돌함.

이에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하여도 그 책임이 면제되도록 함으로써, 법률간 충돌을 해 소하려는 것임(안 제566조제9호 삭제).

법률 제 호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66조제9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면책허가를 받았으 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 금 청구권에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66조(면책의 효력) 면책을 받	제566조(면책의 효력)
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	
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	
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	
그 책임이 면제된다. 다만, 다	
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	
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.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9.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	<u><삭 제></u>
법」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	
자금대출 원리금	